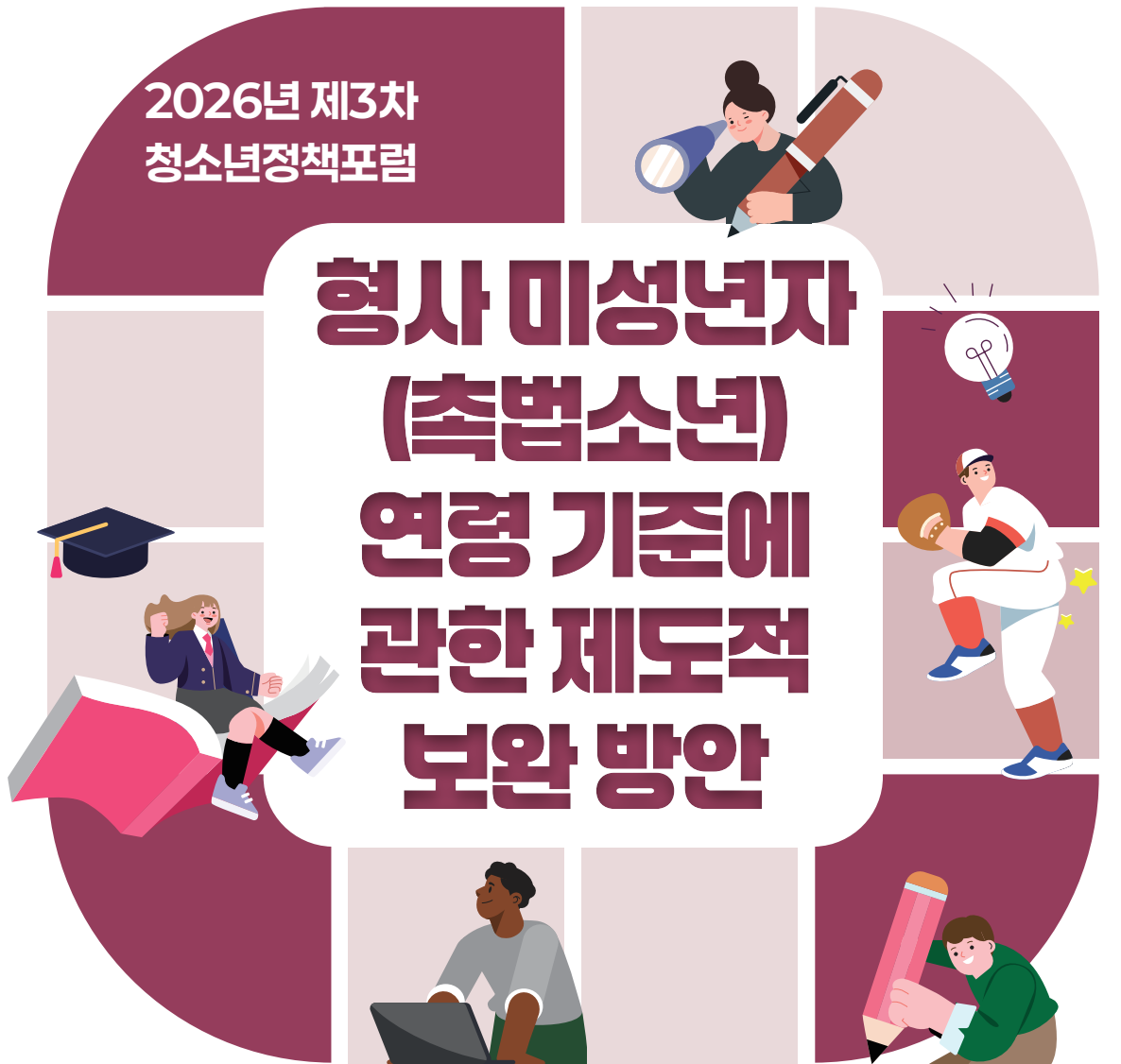


2026년 제3차
청소년정책포럼

형사 미성년자 (촉범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일시 2026년 4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공동주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 노정희입니다.

지난달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소년 문제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소년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고민을 안고 오신 학교 선생님, 아동 인권과 보호를 대변하는 아동인권·복지·상담 전문가, 그리고 사법절차의 측면에서 아동들을 대면하는 수사 및 재판 담당자, 변호사 등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주신 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아동의 특성에 맞게 아동을 보호·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 낼 국가와 사회의 책무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은 각기 다른 위치에 계시지만, 지향점은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협의체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리나라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모두의 지혜가 모일 때 비로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관련 단체의 토론회나 언론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촉법소년 관련 의견이 개진되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과 소년의 미래를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보다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지난달 1차 포럼에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 노정희 공동위원장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배상균 연구위원님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정부 부처로 참여 중인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함께 주최하고, 소년 사건 관련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제도적 보완사항을 논하기 위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과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담겨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답은 어느 한 곳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보호하며, 판결하는 여러분 각자의 시선이 모두 소중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며, '처벌' 그 이상의 '교화와 회복'이라는 공동체의 해법을 찾는 따뜻한 공론장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청소년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회적 대화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이 주시는 제언들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연령 기준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따뜻한 제도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챙기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고진입니다.

먼저, 형사미성년자 관련 제도 보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님과 노정희 사회적 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배상균 연구위원님과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론화가 진행중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촉법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정적 낙인 효과와 범죄 성향 학습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의 연령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두 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이지만, 촉법소년의 계도와 성장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중시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연령 하향 또는 유지의 논의를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법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아울러 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치유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인성 교육, 사회적 정서 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역량을 키우고자 힘써왔습니다.

그럼에도 정서적 어려움, 학업 장애, 불우한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 약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다 결국, 범죄에 빠지게 되는 청소년이 존재하는 현실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이 범죄라는 어두운 길로 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끌어안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와 향후 공론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장관 **최교진**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오늘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의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규정은 1953년 제정 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져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 촉법소년의 중대한 범죄로 인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고, 형사절차 진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더 나아가 이를 남용까지 할 여지가 있어 국민적 문제의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촉법소년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어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범죄 가운데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사례도 적지 않고,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인 장기·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촉법소년 제도는 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운영 중인 소년사법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사회 복귀를 지원해 왔습니다.

촉법소년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는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 소년을 성급하게 범죄자로 낙인찍을 경우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교육과 사회복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교화와 범죄예방의 주무부처로서 2022년에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소년원 처우 개선, 소년 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원 및 교도소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된 대책을 시행하는 등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 전반에 대한 교육과 사회복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보호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는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므로, 촉법소년 연령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법무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위한 제2차 공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은 성인과 다른 존재인 만큼,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보호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기준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연령 기준의 문제를 넘어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공론의 장을 정성껏 준비해주신 성평등가족부 장관님과 노정희 사회적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기꺼이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 법조 및 교육계 현장 실무자,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화를 근본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그간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예방과 선도를 중심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재비행을 일삼는 등 도를 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과연 현재의 소년사법 시스템이 촉법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더 늦지 않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포럼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라는 단편적 논쟁을 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개입, 재범방지를 위한 교화 인프라 확충, 나아가 소년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년의 환경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느 한 기관만의 의지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 정책, 교육, 그리고 사회 문화적 접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통찰력, 현장의 생생한 경험,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 믿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오늘 포럼에서 오갈 치열한 토론과 다양한 해안을 경청하여 치안 현장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드는 귀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국민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백일현입니다.

오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청소년정책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촉법소년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보았던 1차 공개포럼에 이어, 오늘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이신 노정희 교수님, 그리고 교육부 최교진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위해 함께해 주신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여러 관계부처와 우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청소년 정책은 교육, 법무,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이 맞닿아 있는 만큼,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차 공개포럼이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2차 공개포럼은 한 단계 나아가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에 대해 보다 차분히 살펴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연령 기준의 조정 여부에 머무르기보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법적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 지원,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와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 그리고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정책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법조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정책을 고민하는데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백 일 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일 시 2026. 4. 15. (수) 14:00 ~ 16:30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서울 중구 소재)
*KTV 생중계 및 유튜브 동시 송출

공동주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관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PROGRAM

사회 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 회	
14:05-14:20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회 공동위원장,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 최교진 (교육부 장관) ▶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20-14:50	주제발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
14:50-15:00	휴식 및 자리 준비	
15:00-16:30	종합토론	좌 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6:30	질의응답 및 폐회	



목차



주제 발표

-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1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

■ 종합토론

- 토론 1** 사법의 종결에서 교육의 시작으로:
촉법소년의 연착륙과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위한 현장의 제언 · 21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 토론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한계와 실효적 대안
-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과 과제 · 27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 토론 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보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로 33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토론 4** 소년사법의 패러다임 전환:
처벌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39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 토론 5**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55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 토론 6**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한계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대응 방안 논의 61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토론 7** “절차만 있고, 소년은 없는 소년법” 선별 송치 및 조사 권한 등
경찰의 ‘송치 전 단계’ 도입 중심으로 71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 토론 8**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미성년자 제도 77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 토론 9**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83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주제
발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



2026년 형사미성년자(축법소년) 연령 관련 제2차 포럼 주제 발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절차 정비 · 처우 개선 · 피해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배상균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핵심 논점

연령 논쟁을 넘어
무엇을 먼저 보완할 것인가?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

1

2026년 형사미성년자(축법소년) 연령 관련 제2차 포럼 주제 발표

발표의 핵심 주장

주장 1

형사미성년자 논의를
“연령 인하 찬반”의 단선적 구
도에서 벗어나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

주장 2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연령 조정보다
① 절차 정비,
② 처우 개선,
③ 피해자 권리 보장이다.

핵심 논점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쟁보다
제도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실증과 운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먼저다.

발표 흐름

문제의식

연령 논쟁의 한계

제1차 포럼 통계

사건 유입·처리 구조

해외 동향

연령보다 절차 설계

절차·처우·피해자

실행 가능한 보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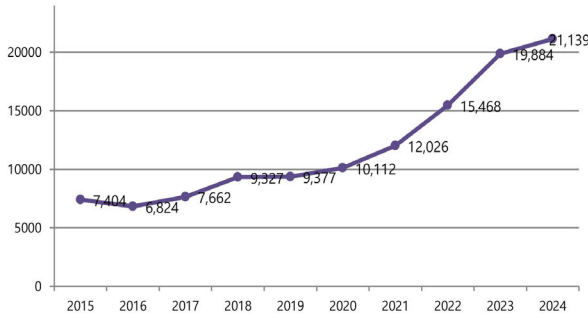
정책제언

다섯 가지 실천적
제언

2

왜 '연령 논쟁'만으로는 부족한가

최근 10년간 촉법소년사건의 법원 접수 추이



절도와 폭력의 비중이 크고, 강간·강제추행은 최근 3년 사이 증가

2015년 7,404건 → 2024년 21,139건

출처: 2026.3.18 1차 포럼 자료집 통계 재구성

2024년 전체 소년보호사건 처리

51,020건

처리 총량 증가

2024년 촉법소년 처리

21,139건

보호처분 비율

50.1%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

- 사건 유입과 처리 총량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병목은 더 분명해졌다.
-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사건의 상당 부분이 실질 개입 없이 끝나는 구조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
- 따라서 지금 손봐야 할 것은 연령보다도 초기 분류·조사·처우 연결의 질이다.

심리불개시 37.4%

3월 자료집이 보여준 핵심 판단

판단 1

13세로 낮춰도 실행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은 13세 하향이 실제 처벌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상징적 입법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큰 입법이라면, 먼저 현행 제도의 병목을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 2

국제 기준도 14세 미만 하향에 신중하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연령 하한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 연령 조정 논의는 국내 여론만이 아니라 국제인권 기준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판단 3

현행 보호처분도 이미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다

보호처분은 단순 복지조치가 아니라 형사책임연령의 확실성을 보완하는 제재적 수단이라는 점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은 분명히 언급한다.

즉, 문제는 "처벌이 없느냐"가 아니라, 처분이 얼마나 적시에 적절하게 작동하느냐이다.

→ 연령 인하보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점검이 먼저다

해외 동향: 핵심은 연령 숫자보다 절차와 처우 설계

주요국 비교 요약

국가	기준 연령	주요 특징	시사점
독일	14세	교육처우 우선, TOA, 18~20세 임의 적용	연령보다 맞춤형 처우 설계
영국	10세	youth caution, 지역사회 개입	비사법적 처분이 핵심
일본	14세	엄벌화 경향 + 촉법소년은 아동상담소 우선 절차	경찰력 확대보다 복지적 접근 우선
프랑스	13세 미만 분별력 부재 추정	절차 간소화, 교육보호관찰	신속한 판단 + 교육적 개입
미국	주별 상이	복잡한 이송제도 + MST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령보다 diversion-treatment

어느 나라도 연령 기준 변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공통의 초점은 초기 선별, 지역사회 연계, 교육·치료적 처우, 피해자 반영이었다.

1. 절차 정비: 경찰 단계의 초기 다이버전(훈방권·화해제도)이 출발점이다

왜 경찰 단계인가

-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
- 초기 조사와 사실확인 기준이 불균질하면 사건 편차가 크다.
- 문제는 조사권 확대 자체보다, 초기 분류·선도·송치 기준의 표준화에 있다.

접수 → 기초평가 → 분류 → 선도/송치

- 기초 위험평가표
- 가정환경 체크리스트
- 피해자 위험요소 기록
- SPO·학교·보호자 연계 프로토콜

3월 자료집이 지적한 공백

- 소년법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비해 간략하고, "수사"에 해당하는 규정이 사실상 부재
-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비하다.
- 신종 디지털 범죄 대응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핵심은 "경찰 조사권 강화"가 아니라 "초기 다이버전과 연결 구조의 정교화"이다.

보완 방향

- 1 훈방 기준·절차의 표준화
 - 2 화해제도(회복적 경찰활동·화해권고)의 경찰 단계 확대
 - 3 선도 이후 복지 연계 의무화
 - 4 통계 공개와 운영평가 추적
- "경찰-회복적 대화-보호자·학교·지역기관 연계"를 촉법소년 사건의 기본 운영 모델로 전환
- 핵심은 "처벌도 방치도 아닌 제3의 대응"

2. 처우 개선: “몇 호 처분”보다 “연결되는 처우”가 중요하다

2024년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50,848건

접수 총량 증가

2024년 보호처분 인원

30,989건

소년원 보호처분 인원

21년 1,361명 → 25년 2,532명

현재 병목

- 수용부담이 커지면서 적합한 처우를 설계할 여력이 압박받는다.
- 분류심사 기능이 충분하지 않으면 처분의 적정성과 이후 처우의 실효성이 모두 흔들린다.
-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 맞는 67호 처분 인프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필요한 전환

진단 → 배치 → 사후관리

- 권역별 분류심사 기능 확충
- 정신건강·중독·가족치료 연계
- 처분 종료 전 전환계획 수립
- 학교·지자체·복지기관 사례회의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핵심 논점

처우 개선은 처분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처분의 다양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문제다.

“끝나는 처분”이 아니라 “연결되는 처분”이 되어야 한다.

출처: 2026.3.18 1차 포럼 자료집 통계 재구성

7

3.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 보호주의와 제로섬이 아니다

현재 한계

- 피해자 진술권은 인정되지만, 심판기록 열람·등사와 결과 통지는 제한적이다.
- 비공개주의 아래 절차 진행과 결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 피해회복과 심리적 안정, 공공안전 인식이 절차 속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다.

질문은 “비공개주의를 폐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필요한 범위의 참여와 정보 접근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이다.

권리 보장 확대

- 1 진술권
- 2 사건 진행 통지
- 3 심판결과 통지
- 4 접근금지·분리조치 의견 제출
- 5 회복적 대화 참여 여부 선택권

보완 방향

- 핵심 정보의 통지제도 도입
- 피해자·법정대리인·신뢰관계인의 절차 참여 가이드 마련
- 피해회복 여부를 처분 설계와 종료 평가에 반영

소년 보호주의와 피해자 권리는 제로섬이 아니라 제도 신뢰를 함께 높이는 이중 과제다.

8

정책제언: 다섯 가지 실천적 정책 제언

- 1 **논의 프레임 전환** 연령 인하 찬반을 넘어 소년비행·범죄예방 정책 전반의 문제로 확대
- 2 **경찰 단계 초동절차 법제화** 훈방 기준 표준화, 화해제도(회복적 경찰활동·화해권고)의 경찰 단계 확대, 복지 연계 의무화
- 3 **처우 인프라 재구성** 분류심사 기능 강화, 치료적 인프라 확충, 전환계획 의무화
- 4 **피해자 권리 보장 명문화** 통지권, 절차 참여 선택권, 안전조치 선택권 제도화
- 5 **증거기반 정책체계 구축** 촉법소년 통계, 정책평가, 제도 개선의 데이터 기반화

핵심 결론

연령 조정 논의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보완이 먼저 작동해야만이 정책 논의가 경험(증거)과 신뢰를 얻게 된다.

즉시 가능한 보완부터 실행하고, 그 결과를 소년비행예방 정책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맺음말

**형사미성년자 제도에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연령 숫자”보다 “제도의 작동 방식”이다.**

2026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2차 포럼은,
① 절차 운영의 표준화 ② 보호처분 이후의 연계성 ③ 피해자 권리의 실효성
이라는 세 측면에서 지금 보완해야할 방안(실천적 제언 5가지)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핵심 문장

우리 사회는 이슈에 매몰된
연령 논의를 넘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근거에 기반한 소년비행
예방정책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I. 서론

오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2차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핵심 주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형사미성년자 논의를 “연령 인하 찬반”이라는 단선적 구도에서 벗어나,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확대된 논의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연령 조정보다 ① 절차 정비, ② 처우 개선, ③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에서 이미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제도의 현황, 연령 논의의 한계, 절차적·실질적 대응 수단의 재검토 필요성을 중심으로 좋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논의를 이어받아, 선행 연구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재확인하고, 2026년 현실에 맞춘 실천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II. 형사미성년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1. 문제의식

우선 문제의식부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소년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소년법 폐지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의 주제발표는 연령 기준 설정이 단순한 성숙도 판단이 아니라 형사제재의 범위와 사회보호 방식 전체와 연결된 정책적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연령 기준이 단지 신체적·정신적 스펙상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이해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의미를 감수(甘受)할 수 있는 이해가 충족될 수 있는 최저 기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령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10~12세 촉법소년 사건에는 동일한 절차 문제와 대응 공백이 여전히 남는다는 점도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에 의하면, 촉법소년 범죄의 약 70% 이상이 절도와 폭력이며, 특히 절도범의 50% 이상이 무인점포나 자전거 절도 등 경미 범죄가 중심입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은 4% 내외로 전체 소년범의 강력범죄 비율과 유사합니다.¹⁾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지금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히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 사건이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걸러지고, 어떤 처우로 연결되는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이주희 의원실 주관, 2026.4.

특히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에 따르면 전체 소년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2024년 51,020건까지 증가했고, 촉법소년 처리 건수도 2024년 21,13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촉법소년 사건의 보호처분 비율은 2024년 50.1%로 낮아진 반면, 심리불개시 비율은 37.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령 하향 논의보다, 사건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 개입 없이 종료되거나 사법적 접촉만 확대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오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2차 포럼의 주제발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즉 첫 번째로, 형사미성년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로서,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나 정치적 이슈로 거론됨에 따라 불거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단지 촉법소년의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이슈를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의 논점으로 확대해 보면, 우리가 논의해야 할 과제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수한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해 온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충분한 실증적 연구와 비교법제 검토로서 충분한 합의(含意)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 제도 개선이 있었기에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나 정치적 이슈로 거론됨에 따라 불거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소년법과 소년정책에 관한 사항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사건 발생 시마다 일시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필요한 제도 보완은 지속적인 정책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빌어 저를 비롯하여 이미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지금의 현실에 맞게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13세 소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결국 상징적 입법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연령 하한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²⁾

부디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소년들을 위한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으로서 거국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2. 해외 동향: 절차와 처우 중심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³⁾ 2022년 수탁보고서,⁴⁾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⁵⁾가 공통적으

2) 서울신문(2026.3.31.), “[단독]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14세 미만으로 낮춰선 안 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3/31/20260331500167> (최종검색: 2026.4.3.).

3) 김진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NARS 현안분석 제220호, 2021.

4)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5) 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로 시사하는 바입니다만, 해외 주요국의 소년사법 운영을 보면, 형사미성년자 또는 형사책임 최소연령의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령 아래 또는 경계선에 있는 소년에 대해 어떤 절차를 열고, 어떤 처우를 연결하며, 어느 기관이 선도적으로 개입하는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연령 기준은 제도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효과는 절차의 세밀함과 처우 인프라, 지역사회 연계의 정교함에서 갈립니다.

가. 독일: 교육처우 우선과 피해자-가해자 조정(TOA)

2022년 수탁보고서⁶⁾에 따르면, 독일은 청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에 따라 형사미성년 연령을 1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원천 배제되고, 14~17세 청소년은 소년법원 절차에 따르되 교육적 처우가 최우선입니다. 18~20세 청소년에게도 발달특성에 따라 소년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제도는 피해자-가해자 조정(Täter-Opfer-Ausgleich, TOA)입니다. 형사절차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문 조정인의 중재 아래 대화하며 피해 회복과 화해를 시도하는 구조로, TOA가 성립하면 검사는 기소를 유예하거나 법원은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과 소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설계입니다.

나. 영국: 연령은 낮지만, 핵심은 비사법적 처분과 지역사회 개입

2022년 수탁보고서⁷⁾에 따르면, 영국은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이 10세로 낮은 편이지만, 그 제도 운용의 핵심은 단순한 조기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영국은 법원선의주의와 소년법원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 같은 공식적 비사법 처분을 활용하고, 이후 Youth Offending Team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기소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대안 처분으로, 이후 가족 참여와 지역사회 개입 프로그램이 뒤따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촉법소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훈방·회복적 대화-지역사회 연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일본: 엄벌화와 형사미성년자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 적용

2022년 수탁보고서⁸⁾에 따르면, 일본은 고베 아동연쇄살인사건 이후 소년법 엄벌화가 강화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형사미성년 검찰이송(역송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소년원 송치 대상 확대, 18·19세 특정범죄의 성인형사절차 적용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저연령소년, 즉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이 곧바로 형사절차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20-A-02, 2020.

6)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7)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8)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아동상담소를 통한 복지적 분기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⁹⁾는 이를 “일본식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라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저연령소년을 발견하면 일정한 경우 아동상담소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통고하고, 아동상담소는 훈계·복지조치·시설입소·가정법원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프랑스: 절차를 간소화하되, 교육과 보호에 중점

2022년 수탁보고서¹⁰⁾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9년 제2019-950호 법률명령을 통해 미성년자 형사사법절차를 단순화하고, 처벌보다 교화 우선, 사법 전문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을 강조했습니다. 범죄 후 3개월 이내에 유죄 인정과 피해보상에 관한 판단을 진행하고, 이후 교육보호관찰을 통해 일정 기간 교육·감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분별력 부재 추정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마. 미국: 다양한 형사절차와 공존하는 MST 대응

2022년 수탁보고서¹¹⁾에 따르면,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크게 달라 단일 모델로 보기 어렵지만, 오히려 그래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일부 주는 소년 형사소추 최소연령을 두지 않거나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의 이송·역이송·결합판결 제도도 복잡하게 운영됩니다. 이는 연령만 낮추거나 엄벌 규정을 늘린다고 해서 제도가 단순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Multisystemic Therapy(MST, 다중체계치료) 같은 지역사회 기반 개입이 중요한 대응책으로 발전했습니다.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¹²⁾도 미국 표준소년법원법(Uniform Juvenile Court Act)의 초입면접관 제도를 소개하면서, 송치 이후 즉시 조사를 하고 구금이 필요 없으면 곧바로 석방하도록 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상의 비교를 종합하면, 해외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어느 나라든 연령 기준 변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의 초점은 연령 인하 자체가 아니라, 경찰 단계 다이버전, 전문적 조사와 처우 설계, 지역사회·복지 연계, 피해자 권리의 절차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연령 조정보다 절차와 처우의 정교한 설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A-02, 2020.

10)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11)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12) 문선주·김윤정,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03, 2019.

III. 선행 연구 검토

이제 본론입니다. “선행 연구 검토”라는 표현을 제목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행 연구가 이미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현실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크게 3가지의 관점에서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절차 정비

우선 절차 정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¹³⁾은 이미 소년범죄 대응에서 증거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엄벌화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신속한 개입, 절차의 효율화, 교육과 복지 확대,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수탁보고서¹⁴⁾와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¹⁵⁾ 역시 현행 검사선의주의와 이원적 절차가 전문성 부족, 사건분류의 불균형, 조기 개입 지연, 절차지연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재범 위험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현행 제도의 절차적 불비가 더 도드라집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비해 소년법 절차가 간략하고, ‘수사’에 해당하는 규정이 사실상 부재하며,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AI 기술이나 SNS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등 신종 디지털 범죄의 급증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경찰 조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칫 촉법소년 사건의 사실상 형사절차화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차 정비의 핵심은 경찰의 강제적 조사권을 넓히는 데 있기보다, 경찰 단계의 초기 다이버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2017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¹⁶⁾에서는 경찰 훈방기준 마련과 초기 집중관리, 가족기능 강화, 범정부 협의체 신설 등 단계별 개입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년 수탁보고서¹⁷⁾에서도 경찰 단계 훈방제도의 법제화와 화해권고제도의 확대를 제안했고,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¹⁸⁾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경미사안에서 훈방 및 선도심사위원회 회부와 연계될 수 있으며,

13) 김진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NARS 현안분석 제220호, 2021.

14)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15) 문선주·김윤정,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03, 2019.

16) 이승현·박성훈, 소년강력범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7-AB-07, 2017.

17)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18) 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A-02, 2020.

저연령소년일수록 낙인을 줄이고 재통합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2019년 시범운영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후 전국 경찰서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를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경찰-회복적 대화-보호자-학교-지역기관 연계”를 촉법소년 사건의 기본 대응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찰 단계의 개입은 단순 훈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¹⁹⁾는 조사 단계에서 발달특성에 맞는 조사도구, 학대피해 여부의 필수적 확인, 전문가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실제 지역사회 지원체계도 드림스타트, 청소년안전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지만 형사사법기관과의 적극적 연계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훈방이나 심리불개시 이후에도 보호자 교육, 학교 연계,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일정 기간 사후 모니터링이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도 아니고 방치도 아닌 제3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처우 개선

두 번째 과제는 처우 개선입니다.

지금 논의의 핵심은 “어느 나이부터 처벌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아이에게 어떤 처우를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2022년 수탁보고서²⁰⁾는 촉법소년 범죄통계체계 구축, 소년분류심사원의 양적·질적 기능 강화, 화해권고제도 확대를 실무상 대응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제언은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는 통계체계 구축을 넘어 통계의 연계와 정책 활용도 제고, 분류심사 기능 강화를 넘어, 진단-처분-사후관리의 연결성 확보로 논의를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처우 인프라의 압박은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50,848건, 보호처분 인원은 30,989건이며, 특히 **소년원 보호처분 인원²¹⁾은 2021년 1,361명에서 2025년 2,53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년원과 보호처분 체계 전반에 수용부담과 처우 압력이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제언은 단지 “처분을 강화하자”가 아니라, 과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적합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분산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년분류심사 기능의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²²⁾는 분류심사 전담기관 부족으로 과밀수용과 체계적 비행원인 진단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권역별 분류심사원 증설, 인력 보강, 전문심사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19) 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A-02, 2020.

20)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21) 지표누리,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 (최종검색: 2026. 4. 3.).

22) 이승현·박성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B-05, 2016.

지적했습니다. 대행소년원 체계는 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연구는 소년원 운영 논리에 분류심사 기능이 종속되면 고유한 비행진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분류심사는 단순한 수용 전 단계가 아니라, 처우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진단 장치여야 합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치료적 처우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²³⁾에서 제언한 바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6호 처분과 7호 처분, 즉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²⁴⁾는 6호 시설에 맞는 별도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7호 처분도 당시 기준으로 사실상 대전소년원 중심의 제한된 운영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법에 처분이 없느냐”가 아니라, 치료·의료·심리 회복을 실제로 담당할 인프라가 충분하냐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의 문제도 양적 문제로서 소년원 과밀화의 문제와 질적 문제로서 치료·의료기능 부족으로 구분되며, 앞으로는 6호·7호 처분의 실질화를 위해 정신건강, 중독, 발달장애, 가족치료를 포괄하는 지역 기반의 치료적 처우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연령소년, 특히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²⁵⁾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1호 처분 위주로 운영되고, 보호관찰이나 맞춤형 수강명령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에게 필요한 개입이 단순한 시설송치나 형식적 훈계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에 맞춘 개별 상담, 가족개입, 정신건강 지원, 학교 복귀 지원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처우 개선은 처분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처분의 다양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문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3. 피해자 권리 보장

세 번째 과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제도 논의가 피해자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2022년 수탁보고서²⁶⁾는 현행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인정되지만, 심판기록 열람·등사나 심판결과 통지 등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 정리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는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을 가지는 주체이므로, 가해 소년의 인격권과 건전육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 참여와 정보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이는 소년사법의 비공개주의를 전면 부정하

23) 배상균·임정재·김성규·김혜경·박찬걸,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7호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2-AB-02, 2022.

24) 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A-02, 2020.

25) 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A-02, 2020.

26)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자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주의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절차 통지권과 결과 통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권리보장은 추상적 배려가 아니라, 최소한 사건 진행 통지, 심판결과 통지, 접근금지·분리조치에 대한 의견 제출권, 회복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소년법의 보호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즉, 이제까지의 논의가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소년보호만을 강조하면,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계속해서 “면죄부”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IV. 정책제언 및 결론

오늘 이 자리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논쟁은 여전히 중요하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현재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미 축적된 연구와 제언을 이 자리에서 다시 공론화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의 실천적 제언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언 1 논의 프레임 전환입니다.

연령 인하 찬반의 단선적 구도에서 벗어나,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의 문제로 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강력범죄가 이슈가 될 때마다 소비하고 방치하는 패턴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언급을 삼갔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법원선의주의나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제언 2 경찰 단계 초동절차 법제화입니다.

훈방 기준 표준화, 화해제도(회복적 경찰활동·화해권고)의 경찰 단계 확대, 복지 연계 의무화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촉법소년 사건에 “처벌도 방치도 아닌 제3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책임 없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는 교육적 조치로도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제언 3 처우 인프라 재구성입니다.

소년분류심사 기능의 양적·질적 강화, 치료적 처우 인프라 확충, 처분의 다양성·적합성 제고를 위한 예산·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과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적합한 처우를 제공하는 분산형 인프라 설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 형사정책적 수단이자 처우로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언 4 피해자 권리 보장 명문화입니다.

통지권, 절차 참여 선택권, 안전조치 선택권을 소년보호사건에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비공개주의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제언 5 증거기반 정책체계 구축입니다.

촉법소년 범죄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평가와 개선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슈 중심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관하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1차 포럼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거론한 보고서에서는 **엄벌화 일변도가 아니라 신속한 개입, 관리의 효율화, 교육과 복지 확대, 지역사회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새로운 지향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핵심 문제가 연령 기준 자체보다 제도의 작동 방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이 **‘연령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가가 저연령 비행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보호하며, 어떻게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즉 소년비행 예방정책 전반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의 연령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령 논의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소년비행 예방정책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 포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자료집, 2026.3.
- 김진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NARS 현안분석 제220호, 2021.
- 문선주·김윤정,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03, 2019.
-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 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구보고서, 2022.
- 배상균·임정재·김성규·김혜경·박찬걸,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7호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2-AB-02, 2022.
- 이승현·박성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B-05, 2016.
- 이승현·박성훈, 소년강력범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7-AB-07, 2017.
- 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A-02, 2020.
-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이주희 의원실 주관, 2026.4.
- 서울신문(2026.3.31.), “[단독]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14세 미만으로 낮춰선 안 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3/31/20260331500167> (최종검색: 2026.4.3.).
- 지표누리,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 (최종검색: 2026.4.3.).



종합 토론

- 토론 1** 사범의 종결에서 교육의 시작으로:
촉법소년의 연착륙과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위한 현장의 제언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 토론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한계와 실효적 대안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과 과제-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 토론 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보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로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토론 4** 소년사범의 패러다임 전환:
처벌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 토론 5**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 토론 6** 현행 소년사범제도의 한계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대응 방안 논의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토론 7** “절차만 있고, 소년은 없는 소년법” 선별 송치 및 조사 권한 등
경찰의 ‘송치 전 단계’ 도입 중심으로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 토론 8**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미성년자 제도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 토론 9**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1



사범의 종결에서 교육의 시작으로: 촉법소년의 연착륙과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위한 현장의 제언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토론
1

사법의 종결에서 교육의 시작으로: 촉법소년의 연착륙과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위한 현장의 제언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I. 서론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재 방학중학교에서 5년째 학교폭력, 생활지도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교사 이호욱입니다. 단순한 연령 하향 논의를 넘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피해자 권리 보호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현장 교사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논의는 주로 '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소년들이 돌아오는 학교 현장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느낀 문제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I. 사법제도와 공교육 제도의 연계 부족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낮아져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든, 현행 제도처럼 보호 처분만 이루어지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 소년들이 결국 학교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복귀했을 때 학교 현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호 처분이든 형사 처벌이든 사법 절차가 끝났다고 학생들의 행동이 하루아침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돌아온 학생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원 제도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 먼저 학생이 어떤 보호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회봉사, 보호관찰, 혹은 부가적인 특별교육은 처분 사실조차 통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법원에서 명령한 특별교육을 가야 해서 조퇴해야 한다는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그게 뭐냐고 되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편, 보호 처분 이전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또는 6호~10호 처분은 학생 출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 사실 자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학교는 돌아온 학생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어받아 교육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소년법 32조 제5항에는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 소년부가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호 처분이 끝나고 소년이 복귀하는 공교육 현장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교에서의 적응, 또래 관계 형성, 사회적 기술 습득 같은 생활교육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교육적 공백은 전적으로 개별 학교와 담당 교사들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III. 학교 사회의 특수성과 2차 피해 우려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사회와 달리 매우 좁고, 폐쇄적입니다. 정보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행소년 한 명이 학교라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강력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소년사법의 비공개주의는 매우 철저하지만, 당장 옆자리에 앉아 있던 친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서 몇 주씩 자리를 비우거나 처분을 받아 몇 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이를 모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학교라는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첫째, ‘촉법소년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라는 사회적 오해를 확산시킵니다. 비행을 저지르고 돌아온 학생은 잘못된 영웅 심리를 갖게 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모방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다른 학생들이 서신을 보냅니다. 마치 군대 훈련소에 입대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광경입니다. 돌아오면 몇 통의 편지를 받았는지 자랑하거나, 그곳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둘째, 평범한 다수 학생의 피해를 유발합니다.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대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행소년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일반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학습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정서적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대에서 유명한 비행소년이 처분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많은 학생이 당분간은 방과 후에 동네를 돌아다닐 수도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IV. 사법-교육 연계 및 다수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촉법소년 제도가 진정한 교화와 재사회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의 종료는 끝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개입이 시작되는 기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장 교사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법제도와 공교육 제도 간의 공식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제한적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처럼 학교가 철저히 배제되는 시스템으로는 비행소년의 성공적인 복귀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낙인 효과를 방지한다는 소년사법의 비공개주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것이 학교 현장의 ‘교육적 방치’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 5항의 취지를 확장하여, 처분이 종료되고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때 학교장,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필수 인력에게는 제한적으로나마 학생의 처분 결과와 교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고자료(주의사항, 심리상태, 상담 내역 등)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교는 사법 기관에서 이루어진 교화의 방향성을 이어받아 맞춤형 생활지도와 학습 결손 보완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평범한 학생을 보호하고, 비행소년의 연착륙을 돕는 ‘중간 적응 단계’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비행소년을 무방비 상태의 일반 교실로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소년 본인에게도, 일반 학생들에게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소년이 학교로 복귀하기 전,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 징검다리 기간 동안 소년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체화하고, 학교의 일반 학생들은 물리적, 심리적 분리를 통해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V. 결론

소년이 돌아와야 할 곳은 결국 학교입니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범한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법-복지-교육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촘촘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한계와 실효적 대안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과 과제-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토론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한계와 실효적 대안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과 과제-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가 단순히 '처벌 연령 하향'에만 머무르는 것은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연령 논쟁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의 정비, 소년법에 대한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사법 절차의 정비

소년사건은 성인 범죄와 발생 원인 및 양상이 다르므로, 처벌보다 '교화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절차가 필요하다.

- 신속한 처리: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지 변화가 빠르다. 범죄 발생 후 재판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의 행동과 제재(처벌) 사이의 연관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필요하다.
- 사법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경찰, 검사, 판사는 청소년 심리와 발달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소년전문법원'의 확대 설치나 소년 전담 수사 부서의 전문성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건의 이면에 있는 환경적 요인까지 파악해야 한다. 현실은 소년 재판 판사의 근무 기간은 보통 1~2년에 불과하다. 담당 판사의 사건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경우에 따라 가사 재판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 다이버전(Diversion,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제도의 내실화: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지역사회 내에서 상담, 교육, 선도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 확대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유대감을 회복시킨다.

2. 처우 개선 및 인프라 확충

현재 보호처분이 실질적인 교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수용시설에서 '범죄를 배워서 나온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 소년원 등 보호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 현재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9호처분:6개월→4개월 조기 퇴원, 10호 처분: 2년→1년 조기 퇴원(보호관찰 조건부))

*처분에 대한 경각심 저하 및 충분한 교육, 교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재비행률 증가

*분류심사원이 소년원 내에 설치 운영으로 과밀화, 전문성이 떨어짐.

-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지원: 비행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경험으로 ADHD,品行장애, 경계성 인지, 소아·청소년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다. 부모의 인식 부족, 낙인으로 인해 치료가 미루어져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투입된 심리치료,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7호(의료 치료 감호 소년원) 시설이 1곳으로 감호·위탁의 한계다.
- 퇴원 후 사후관리: 소년원을 퇴원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원래의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면서 재범률이 급증한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의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여 밀착 관리 필요하다.

보호소년에 특화된 자립관 마련이 필요하다

- 현재 청소년 인구 감소로 가출청소년 쉼터에는 입소 청소년이 점점 줄어들어 종사자 대비 청소년의 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70% 내외)
- 가출 청소년 쉼터를 지역별로 보호소년 특화 자립관(전문성 인력 확보)으로 전환하여 소년원 퇴원 이후 지속적인 보호, 상담, 교육, 자립을 통해 재 비행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환원한다.

3. 피해자 권리 보장

소외된 범죄 피해자가 소년 사법 체계에서 당연한 주체로 보호받아야 한다.

-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절차 참여 확대: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가해자의 사법 절차, 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상황, 처분 결과 통지,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실질적인 피해 배상 지원 체계 마련: 가해 소년의 보호자가 배상 능력이 없거나 배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 치료비를 지원하고 추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제도가 필요하다.
- 회복적 사법 절차의 도입: 피해자가 동의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을 전제로 전문 조정자의 중재하에 가해 소년, 보호자가 피해 소년, 보호자에게 직접 사과, 피해 회복을 약속하여 피해자의 PTSD를 최소화한다.

4. 정책 제언

- 일본: 소년원 전국 46개소로 30명 미만 인원으로 운영. 아동자립지원시설(소사제)은 전국 58개소로 10명 내외 인원을 부부 소사제(가정형)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한국: 소년원 전국 10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사법형 그룹홈) 전국 18개소로 5~10명을 대안 가정,

대안 부모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공포일 2016. 5. 29. 시행일 2016. 11. 30)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필요성

-재범의 고리를 끊는 대안 가정: 부모의 보호력이 없는 김*준(449일 체류), 권*찬(731일 체류)과 같은 소년들에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부모를 대신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학업, 비행환경과 단절시키는 ‘대안부모’ 역할을 통해 건강하게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였다. 천종호 판사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거친 소년들의 재범률은 일반 보호관찰 대상 소년들에 비해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창원지법 사례: 재범률 11.6%→4.9%로 감소)

-맞춤형 교화의 장: 소년원(8~10호 처분)이 격리와 수용 중심에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감호·위탁)은 지역사회내에서 생활하며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다.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높은 보호소년들에게 학업 지속,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을 연계하여 가정, 학교,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시설 확충 및 예산 현실화

2026년 전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18개소(의정부(여1), 수원(남1), 청주(남1), 대전(남1, 여1), 익산(여1), 광주(남1), 울산(남1), 경남(남4), 부산(남2, 여2), 제주(남1, 여1)이다.

-지역적 불균형, 남녀 시설의 불균형으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비지원의 의무화: 민간 후원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다.

-5~10명의 보호소년을 3명의 종사자로 24시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청소년 쉼터: 6명 인력, 야간 종사자 2~3명)

-지역별 쿼터제 도입: 소년범죄 발생빈도가 높은(경기, 인천,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소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형 그룹홈’의 법적 지위 강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협력 체계 구축: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법원에서 처분을 받아 신병이 인수되지만, 운영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청소년회복지원국’ 시설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1호 처분(신병인수)의 내실화: 소년부 판사가 안심하고 1호(신병인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시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는 청소년쉼터 기준에 준용하여 운영하면서 보호소년의 특성에 괴리가 크다.

•‘가정기능회복’ 프로그램 의무화

‘부모가 있음에도 비행’ 케이스(기능적 결손)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만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부모교육 명령제: 소년 재판 처분 시 부모에게도 일정 시간 이상의 ‘부모교육’ 또는 ‘가족상담’ 이수를 강제하는 명령제도를 도입, 강화해야 한다.

(현재 8시간이 최대, 미이행시 벌금 300만원 부과)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도입: 시설 퇴소 전 부모와 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가정복귀 후 관계 회복, 지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보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로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토론
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보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1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뒤 최종 결정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나, 성평등가족부에 속의 토론을 포함한 집단 토론, 과학적 논쟁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국회 내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언론 사설과 기자회견도 진행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이 대립하는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형사사법절차상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는 방안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정책이 피해회복이나 피해자 권리 확대를 이끌지 않고 가해자 처벌 확실성 또한 담보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개인에게 막중한 형사소송의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기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결코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의 찬반 구도를 넘어 소년범죄 예방 정책 전반의 문제로 접근하고,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의 실질적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의 주요 논지에 동의한다. 이하에서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인다.

불처분·심리불개시 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

지난 3월 18일 진행된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토론자료¹⁾에서도 확인되듯, 촉법소년에 대한 정확한 처분 내용은 통계상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최근 10년간 법원의 처분 결과를 보면, 촉법소년 사건의 보호처분 비율은 2024년 50.1%로 낮아진 반면, 심리불개시 처분은 37.4%까지 상승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제19조 제2

1) 이승현(2026), &촉법소년 연령 인하 쟁점에 대한 평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항에 따라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심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심리불개시 처분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뿐 아니라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최근 심리불개시 처분 증가에 대해 학교의 사법화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으나,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결정은 판사의 재량 범위에 속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성인 사건의 양형기준과 동일할 수는 없더라도,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범죄 인정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²⁾’ 등을 주요 요소로 반영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변론시장, 법시장화에 대한 제재 필요성

한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이 확산된 배경에는, 소년 사건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일부 로펌의 ‘변론 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년법’이나 ‘촉법소년’을 검색하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론 시장은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사법 판단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이미 현장에서는 변호사를 동반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가 사실상 일반화되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평생 꼬리표가 될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이미 학내 시스템이 사법적 판단에서 벗어나 대응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반증한다. 학교, 직장, 공동체에서 폭력을 발견하고 폭력에 함께 대응하는 역량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사법적 절차로 이동하고 있다.

학교 등의 개입절차의 정비와 이를 지원할 정책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 처벌중심의 형사사법정책만을 논의하고 도입하게 되면 더 많은 사건들이 사법적 판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개인은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지출하며 더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증시하게 될 것이고,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회복의 과정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소년보호사건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필요성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유형 중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엄벌 중심 정책은 처벌의 확실성이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지 못할 뿐 아니

2) 성범죄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인 ‘진정한 반성’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감형을 목적으로 한 기부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대체로 형사소송과정에서 감형자료로 성폭력피해지원단체에 후원한 기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인데, 단순히 후원금을 납부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된 이후 후원금을 환급해달라고 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와 같은 꿈수기부와 이를 부추기는 변론시장에 대해 알려왔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3월 진지한 반성에 대한 기준을 ‘범죄를 인정한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으로 정의하였다.

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성폭력을 ‘극단적으로 심각한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인식은 특정 유형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전제하게 만든다. 이는 보호받을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결과를 낳고,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자 다움’을 요구한다. 강력한 법적 제재는 높은 수준의 범죄의 증명성을 요건으로 하여, 통상 증인이나 증거가 부재한 성폭력 사건의 처벌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엄벌주의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는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를 중심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나 피해자 측 변호사,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단독 판단으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심리 개시 여부나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참여하거나 기록을 열람할 권리도 제한된다. 처분에 불복하더라도 항고 등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제25조의2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주어야하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심리기일이 1회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의 경우, 피해자가 심리기일 전 의견진술권을 신청하기란 쉽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을 했거나, 피해자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건 통지 제도의 의무화, 재판 기록의 열람등사권,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 재판상황을 방청할 권리, 재판결과 통지 제도³⁾ 등 소년보호사건 재판 중 피해자 권리 보장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4월 9일, 청소년단체를 포함한 아동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회견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소년은 "만 16세 투표권 등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때에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대하더니, 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만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라며) 말이 바뀌느냐"고 반문했다. 우리사회가 정작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는 배제한 채 형사처벌에 있어 책임능력을 강조하며 이중잣대로 아동청소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무엇이 정당한 처벌인지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설계를 다시 하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 소년사법제도 전반의 절차 정비 및 처우개선, 그리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 전다운(2026), '촉법소년 연령 논쟁의 이분법적 한계 : 엄벌보호주의를 넘어선 피해자 중심적 사법의 모색',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 자료집, 이주희 의원실 주관

4) "투표권은 안되고 처벌은 되나" 촉법소년 하향논란에 일격 가한 청소년, 오마이뉴스, 2026. 4. 9,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22861#cb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4



소년사범의 패러다임 전환: 차별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토론
4

소년사법의 패러다임 전환: 처벌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들어가며

오늘 우리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먼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살 민준(가명)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방임 속에서 자랐습니다. 집은 두려웠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 밖에서 떠돌기 시작했고, 말수는 점점 줄었으며, 학교에서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밖에서 만난 또래와 어울리며 절도와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고,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범죄자'였습니까. 주변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끝내 발견되지 못한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연령을 하향화하는 논의는 과연 누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줍니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입니까.

가해 아동 '개인'에게 더 강한 책임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은 회피하고, 더 빠른 해결책을 통해 사회가 안전해졌다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닐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발표자의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강력한 소년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연령하향화 논의와 엄벌주의에 대한 찬성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범죄 연령 하향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여론이 확산된 것에 비해, 소년법과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2008년 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저연

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원 송치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던 것, 그 이후 소년법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법무부에서 연령하향화 논의와 더불어 내세웠던 정책개선 과제¹⁾에서도 소년원 내 수용인원 변화(4인실화), 소년원 내 교육 강화 외에 크게 제도적으로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재검토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 미성년자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발표해주신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지지하며, 3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하향화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지적 및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범죄 성향’이 아닌 ‘보호의 공백’으로 바꾸어 바라봐야 합니다.

- 우리는 소년범죄를 마주할 때 흔히 가해 아동의 개인적 일탈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사례와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살 민준이의 사례처럼,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 ‘비행청소년’,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이전에 아동은 이미 삶의 어느 부분에서 보호받지 못한 경험이 있고, 소년범죄는 오랜 시간 축적된 폭력과 방임, 마음의 고통이 발현된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공백 속에서 드러난 ‘위기 아동의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 또 소년범죄는 가해와 피해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아이 옆에 제대로 된 어른이 단 한 명만 있었다라도 경찰서에 올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이들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있으며, 이들이 그

1)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자료(2022)_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2년 법무부 발표자료]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 먼저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 인실에서 4 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 구치소 내에는 성인법과 소년법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 개에서 3 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한다.
-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법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 특히 소년보호절차에서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 그 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 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책임은 마땅히 국가에 있습니다.

- 소년 사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력범죄가 아니라 절도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재산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²⁾ 소년사범의 범죄 동기를 보면, 호기심, 우발적, 생활비나 유희/도박비 마련 등 청소년기의 우발적 동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³⁾ 또한 단순한 범죄 의도로 범죄를 저지르기보다 가정불화,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방임 등 양부모가 다 있더라도 기능적 결함(돌봄부재 등)이 있는 가정이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로, 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다며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른 나이에 강한 처벌은 아동에게 낙인을 남기고 재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 또한 ‘형사처벌연령 하향화’에 매우 엄격합니다.

- ▷ ‘아동 사법 체계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24호(2019)’ 아동 사법에 관한 유엔 공식 권고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서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 유럽 아동 옴부즈퍼슨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ENOC):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8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명시하며, 18세 이하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모든 아동을 위해 교육, 사회 재통합 및 회복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말하는 14세라는 기준은 이러한 최신의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 경험, 각국의 관례를 토대로 도출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피 킬라제(Sophi Kiladze) 위원장 역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동의 범죄 가담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이러한 결론에 배치되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또한 수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조기에 편입될수록 낙인, 교육 단절,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부작용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른 나이의 형사처벌 개입은 오히려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재범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임을 강조합니다.

- ▷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 연구들은 12~13세 아동은 전두엽 피질이 여전히 발달 중이기에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나 형사 절차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법정 이송 소년의 재범률 증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법을 소년법정이 아닌 성인 형사 법정으로 이송하여 처벌했을 때, 보호처분을 받은 집단보다 재범률이 평균 34% 증가했습니다. 이는 교도소 내 범죄 학습과 사회적 낙인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⁴⁾
- ▷ 빌라노바 대학교의 리딩(Redding) 교수는 7개 주를 대상으로 ‘처벌의 가혹성과 범죄 억제력의 상관관계’를 본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범죄 억제 효과(Deterrence)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소년들이 ‘범죄자 정체성’을 갖게 되어 더 흉악한 범죄로 나아가는 경향을 확인했다.⁵⁾
- ▷ 국내연구 ‘소년사범의 재범 실태와 방지대책’에서도 재범 요인을 실증한 선행연구의 리뷰를 통해 소년

2) 법원행정처(2025), 2024 사법연감

3) KOSIS 국가통계포털 ‘소년범죄자 범행동기(1994-2024)’

재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취약한 보호환경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능적, 구조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보전(補填)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과 제재는 일시적인 재범 억제력만을 가질 뿐 근본적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다.⁶⁾

▷ 국제아동권리네트워크(CRIN)의 연구에서도 역시 청소년 범죄 대응에서 형사처벌 확대 정책은 범죄 예방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 UN 아동 자유 박탈에 관한 글로벌 연구보고서(The United Nations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UN inter-Agency Task Force(UNODC, UNICEF, WHO 등 주요 기구 참여)에서도 “공식적인 사법체계(formal system)로 아동을 처리하는 것이 다이버전(Diversion, 비사법화)보다 재범 억제효과가 떨어지며, 특히 고위험 청소년에게 낙인효과 등으로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고, 아동 구금을 최소화하고 비구금 조치를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⁸⁾.”

- 즉, **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닌 보호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범죄에 연루된 아동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연령 하향을 통한 엄벌보다,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아동 보호 관점의 사법 체계 개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엄벌주의 개입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회복적 사법’ 구현을 위해 현행 소년사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1) 국제기준에 따른 ‘아동친화소년사법 환경 조성’ 기준 및 필요성

-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비준국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5·6차 심의 최종견해에 따르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연령 하향 시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아동보호 관점의 소년사법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현재 한국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의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 아이들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처벌이 아닌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피해자'”라고 단언하며, 한국의 현재 하향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소피 위원장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아동친화적 다학적 심리사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직접 목격했고, 이는 처벌보다 재화와 보호에 집중할 때 더 효과적이라

4) Task Force on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2007). "Effects on Violence of Laws and Policies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Youth from the Juvenile to the Adult Justice System.

5) Redding, R. E. (2010). "Juvenile Transfer Laws: An Effective Deterrent to Delinquency?"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2018)’

7) Discussion paper: Age is arbitrary: setting Minimum ages (by CRIN)

8) The United nations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Executive Summary (2020)

는 점이 입증됐다고도 밝혔습니다.

- 오래 전부터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친화적인 관점의 사법체계와 절차 마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년 범죄를 '처벌'이 아닌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고, 형사책임 연령 상향과 구금 최소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라"는 국제 표준 지침들입니다.

- ▷ 소년사법행정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베이징 규칙, 1985) : 정서적, 정신적, 지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시작을 너무 낮은 연령으로 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4조), 동시에 비구금원칙과 다이버전을 장려한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 40조 3항 (1989) :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 UN 소년비행 예방지침(리야드 지침, 1990) : 범죄가 발생한 후의 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며, 비범죄화외 비낙인화, 소년비행의 원인을 개인의 탓이 아닌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함을 강조한다.
- ▷ 유엔자유박탈 소년보호규칙 (하바나 규칙, 1990) : 자유가 박탈된(수용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며, 수용시설은 교화와 교육 중심이어야 하며 아동은 사회 재복귀를 위해 외부세계와의 연락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다.
- ▷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행동지침 (비엔나 지침, 1997) :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관련 국제기준 및 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틀 제공 및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가의 도움을 강조하고 있다.
- ▷ 유럽평의회 장관위원회가 채택한 「아동 친화적 사법 가이드라인(2010)」⁹⁾: 아동의 최선의 이익, 차별 금지, 참여권, 사법 접근성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여 사법 절차 내 아동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문 인력 교육, 정보 제공, 프라이버시 보호,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통합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 CRC General Comments 24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 24호, 2019) : 형사책임 최저연령(MACR)에 대한 표준 지침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동안만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내 처우(상담, 교육, 봉사)를 통한 회복과 재화에 우선순위를 뒤야한다는 점, 아동의 발달단계와 회복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아동친화적 사법시스템 운영'을 강조하고, 사법 절차 내 아동 권리(참여권, 사생활보호, 낙인 방지 등)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 5/6차 대한민국 정부 최종권고(2019)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1996년부터 2019년까지(1차~6차) 10년 넘게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과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특히, 5·6차 심의에서는 형사미성년자 하향의 개정안 진행에 대한 문제지적과 함께, 만 10세부터의 구금 문제, 소년사법 절차 전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태, 성인에 비해 높은 구금 비율(수용률), 과밀 수용 및 성인과 소년의 혼거 수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권고를 제시했다.(붙임1)¹⁰⁾

9)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child-friendly justice adopted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17 November 2010 and explanatory memorandum (<https://rm.coe.int/16804b2cf3>)

10)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1차~6차 권고사항/1996-2019)

시기	
1차 (1996)	31. 위원회는, 본 협약(특히 제37, 38, 40조)의 정신을 비롯하여 '북경규칙(Beijing rules)', '리야드 지침(Riyadh Guidelines)',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UN규칙(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등 청소년사법 분야 국제연합 기준들에 입각해 한국정부가 청소년 사법제도의 포괄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의 박탈은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단기간 동안만 이루어져야 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권리보호와 법절차, 사법제도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청소년사법제도에 관계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기준을 교육하는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 분과(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청소년사법행정 분야에 관한 국제적 지원을 구해볼 것을 제안한다.
2차 (2003)	56. 위원회는 법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에 처해진 소년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한다. 5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1995년 토론의 날'에 비추어, 특히 아동권리협약 제37·39·40조,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 (베이징 규칙)',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유엔지침(리야드지침)' 등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소년사법제도 종사인력에 대한 전문훈련 실시 b) 신체자유박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신체자유박탈에 이를 수 있는 보호처분에 처해진 모든 소년들이 조기에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 c) 미성년자의 형사절차/보호처분 여부 결정에 관한 검사의 재량권을 없애도록 법률 개정
3/4차 (2011)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 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 보호규칙 (하바나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 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 법원을 설립하라.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버 전(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하라.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를 위한 기구간 패널과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5/6차 (2019)	46. 위원회는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종 형 선고에 산입하는 「소년법」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다음을 우려한다: a) 법에 저촉된 아동 사건을 처리하고 치우하는 두 가지 병렬 시스템의 존재; b) 형사 미성년자 연령 제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과 10세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것; c)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d) 조사단계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후견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 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증거 및 항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거나, 무죄 추정 원칙이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지 않거나,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법적 지원을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 e)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 구금율; f) 과밀 수용, 불충분한 의료 지원, 교육, 훈련, 여가, 식사 제공 및 여아에게 적게 제공되는 식사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구금 환경; 접근, 진정 및 야외활동 제한; 소수자 아동을 위한 합당한 편의 부재; 구금된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 g)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 h) 구금된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DNA 및 HIV 의무검사; HIV 아동 구금자의 격리;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 i) 독방 감금, 가족방문 제한 및 원거리 징계이동과 같은 재량에 따른 징계조치 남용; j) 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 포승, 전기충격기를 포함한 기타 보호장치의 사용; k)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 조치의 부족. 4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적절하고 지속적인 아동권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2) 현행 우리나라 소년 보호처분의 한계 및 문제점

- 한국의 소년법 제1조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인격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소년사법은 처벌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 교화와 회복, 성장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재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사건은 경찰의 최초 수사·조사 단계를 거쳐 관할 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은 1호부터 10호(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그룹홈 등 수시보호, 전문기관 특별치료, 8~10호의 소년원 송치)까지 가벼운 지도에서부터 자유박탈과 격리까지 범죄에 대한 응보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유박탈 구금, 최종 회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 또한 최근 확산되는 엄벌주의적 접근은 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보호처분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보다, 가시적인 처벌에 치중하여 사법 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 연령 하향을 논하기 전에 현재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실태와 현행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소년법 목적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2024년 10월 기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 중 약 12.5%(9명)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범죄소년으로 전이될 가능성'만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고됐다. 언론에서도 우범소년 규정이 지나치게 폭넓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이 가출·결석·가정불화로 인해 보호처분의 단계를 거쳐 결국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부분이다.
- ▷ 연구·국회 보고·시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6호 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룹홈은 7곳, 정원은 고작 50~60명 수준이고, 7호 처분은 협약 기관 부족으로 연 수십 명 수준밖에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호처분 사다리의 중간 단계가 사실상 비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기 청소년은 1~5호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8·9·10호 처분인 소년원으로 배정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의 공판에서 일반 청증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d)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 대한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우범소년"); f) 다이버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철회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형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제공,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메커니즘 등);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징벌방 감금을 폐지하고, 훈육을 위한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되 필요하고 비례적인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을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포함한 여타의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 ▷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문제를 조사한 결과(2019년), 심사원 생활실 수용인원은 규정상 4명 이하여야 하지만, 11명 이상인 경우가 33.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7월 주진우의원실 제출자료에서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7월 29일 기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내 여성 정원이 35명이지만 수용인원이 90명을 넘는 상황이었다. 수용률이 250%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 ▷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소년원(미결수용시설 포함) 중 6곳이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7월 주진우 의원실)
- ▷ 실제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챌스가 조사한 사례 등에 따르면, 소년원 내부에서는 ▲기상·점호·생활동 이동까지 '줄 맞춰 이동', ▲규율 중심 생활지도: 별세우기·근무자 통제 중심 구조, ▲상담 인력 1명당 담당 학생 수 과다, ▲교사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자습, ▲외부 연락·상담·면담 제한, ▲생활반 단위로 구조적 균기 형성, ▲퇴원 후 학교 복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소년원 사건에서, 진정을 낸 청소년은 ▲성찰 자세 강요(20~40분 유지), ▲팔 굽힌 채 버티기, 무릎 굽힌 자세, ▲CCTV 사각지대 별세우기, ▲지도교사의 폭언·조롱, ▲고개 숙인 채 '출서기' 강요, ▲부당한 압수·물품 파손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 오마이뉴스 기고 중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챌스 변상철 국장 기고 내용 활용 11)
- ▷ 범죄를 저지른 14-19세 아동을 수용해 교육/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전담교도소는 경북 김천에 위치한 '김천교도소'가 국내 유일한 시설인데, 최근 소년범죄 증가로 2024년 8월 기준 소년수형자가 171명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었으며, 현재 김천소년교도소 수용률은 90% 수준에 달할 정도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어, 소년전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과밀화된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의 열악한 실태는 '보호와 교육'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청소년을 격리할 수 있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우범소년 보호처분 또한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즉, 건전한 육성과 인격형성을 통해 보호와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시설들은 제대로 된 보호체계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아동권리협약(CRC)에도 위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시설이 '보호와 회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 그곳은 교육의 장이 아닌 범죄를 학습하는 장소가 됩니다. 열악한 수용 환경에서 아이들은 반성이 아닌 사회적 낙인과 고립, 범죄의 재학습을 배울 뿐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과 처우 체계부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회복적 사법'이자 '아동친화 소년사법 체계'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 유럽평의회 아동친화소년사법 가이드라인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4호」를 기반으로,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소년사법 제안서 내 '정책 개선 이행과제' 검토

11) 출처: 오마이뉴스 공익법률지원단체 '파이팅챌스' 변상철 국장 기고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6674)

- ‘아동친화소년사법’이란 소극적으로는 아동을 성인의 종속물로 여기고 아동을 사법절차에서 소외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소년사법 절차에서 아동을 존엄과 가치를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간답게 그리고 아동답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친화소년사법은 이와 같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참여’, ‘존엄성 보장’, ‘차별로부터의 보호’, ‘법의 접근성’을 그 실천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 ‘회복적 사법’이란 가능한 한 잘못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해 특정한 가해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참여시켜, 피해와 요구사항 그리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루는 과정’을 실현하는 사법 절차를 의미합니다.
- 소년사법 정책은 아래와 같은 아동친화소년사법의 핵심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국제인권규범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에 근거합니다.
 - 1) 소년비행의 예방
 - 2) 개입과 전환 (Intervention/ Diversion)
 - 3)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아동의 연령 고려
 - 4) 공정한 재판 보장(무죄추정, 사법절차 참여, 통지, 법적 지원, 사생활 존중 등)
 - 5) 조치 (재판 전 대안, 소년법원 및 판사에 의한 처분, 사형 및 종신형 금지)
 - 6) 미결구금과 기결수감 등 자유박탈 (자유박탈의 기본원칙, 절차적 권리, 처우와 조건 등)
- 유럽평의회(CoE)의 「아동 친화적 사법 가이드라인」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4호」는 아동사법의 핵심을 처벌이 아닌 ‘회복’과 ‘재활’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지난 2018년 제시된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주요 정책 제언들은 여전히 미이행 과제로 남아 있으며, 국내 사법 환경과의 괴리 또한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소년사법 절차 전 과정에 ‘아동 권리’를 내재화하는 ‘아동친화소년사법’으로의 실질적인 개편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사회 복귀라는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친화 소년사법체계’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적 제언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정책적 검토사항

- ▷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규정 삭제** :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소년법’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비행·일탈을 저지르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기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체계 내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 **형법의 형사책임 최저연령 하향화 주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 :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14세가 되지 않은 아동을 피고인으로 형사법정에 세우고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더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접근 필요함. 소년보호사건 심리결과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강화하거나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함.
- ▷ **소년법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최저연령기준 재검토 및 자유박탈 처분이 가능한 최저연령기준 별도 명시**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최저연령기준은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 제4조 개정(2007년 6월 22일 시행)을 통해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하향 조정되었음. 이는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조사·심리 중에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의미함. 초등학교 4학년(만10세)까지 사법절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한 방향인지, 소년원 수용에 대한 결정을 온전히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최저연령기준을 재검토하고, 자유박탈 처분에 대한 최저 연령 기준을 소년법에 별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 **소년사법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조정기구 마련** :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소년사법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체계를 구성하고 총괄 조정기구를 마련할 필요 있음. 아울러 소년사법 관련 기관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야 함.
- ▷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의 증대 및 가정법원의 확충** :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소년법 제 25조 3항’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에 도입된 화해권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조정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이 증대되고, 특히 현재보다 가정법원이 더욱 확충되어야 함.
- ▷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소년법원 설립방안 검토**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사이에 소년조사제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일관성 및 통일성 문제와 중복조사로 인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 우려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법원 확대설치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법원에서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년법원 설치, 가정법원 소년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 체계 마련** : 소년사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경찰, 검사, 법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직원, 교정시설 직원, 보호관찰관, 조사관, 정신심리 전문가, 보조인 등)이 체계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과 국제인권기준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체계 구축해야 함.

4) 절차별/기관별 개선 이행과제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아동 친화적 사법 환경 조성 위한 절차별 개선 이행과제]	
유럽평의회 ‘아동 친화적 소년사법’ 가이드라인 기준 (2010/2024) ¹²⁾	아동친화 소년사법 절차 및 환경 조성 위한 개선과제 (2018) ¹³⁾
<p>[1단계] 사법 절차 전 (Before Judicial Proceedin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작된 안내서(그림책, 만화 등)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향후 절차를 미리 알려줄 것 • 접근성 보장: 아동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쉽게 상담이나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이나 지원 센터를 운영할 것 • 전문 인력 배치: 아동 발달과 심리를 이해하는 전문 경찰 및 상담사가 초기 상담을 담당할 것. 	<p>[1단계] 재판 전 단계 : 경찰 (수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에서 아동에 대한 수사 조사시 기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 수사대상이 된 모든 아동 피의자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 도입 • 경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사제도 마련 •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훈방(경미한 사건에 대해 훈계한 후 입건하지 않고 풀어주는, 조건부 입건유예)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요건과 기준) 마련
<p>[2단계] 사법 절차 중 (During Judicial Proceedin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 조성: 법정이나 조사실을 딱딱한 사무실 형태가 아닌, 편안한 소파나 밝은 색채를 사용한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꾸밀 것. • 조사 방식의 개선(아동보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 녹화 시스템: 아동이 반복적인 질문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1회 조사 원칙(조사횟수 최소화)으로 하며, 이를 영상으로 녹화해 증거로 활용할 것 - 대면 접촉 차단: 피해 아동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실과 출입문을 마련하고, 화상 중계 시스템을 활용할 것 • 전문가 동석: 조사나 재판 시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나 심리 전문가가 동석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것 	<p>[2단계] 심판(재판)단계: 가정법원 소년부/지방법원 소년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 선임권자의 범위 확대 : 소년법 17조 1항 ‘소년’ ‘보호자’로 한정된 기준을 ‘형사소송법 30조 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에 준하여 확대 •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모든 아동이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적 보조사건의 범위 확대 • 소년보호사건에서 대상 소년이나 필요적 보조사건의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심리기일에 법정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소년법’에 명확히 규정 • 동행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대상 소년의 모든 보호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명확히 규정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관한 법률상 요건 정비 • 소년사건 담당 전문법관 양성 및 아동사건에 관한 법관 전반의 인권감수성 및 인식개선 제고 • 소년부 판사의 소년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대상 아동의 이의제기권 보장 •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 재량에 의존하기보다, 보호처분의 유형 및 기간을 결정할 인자에 대한 연구 분석 근거 기반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 소년보호사건 전용법정 신설 등 소년보호사건 심리하는 법정 환경을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 • 소년보호사건에서 화해 권고제도 적극 활용
<p>[3단계] 사법 절차 후 (After Judicial Proceedin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 내용 설명: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아동의 눈높이에서 판결의 의미와 결과를 	<p>[3단계] 처분(집행) 단계</p> <p>1) 감호위탁시설(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에 대한 감호위탁업무를 담당하는 ‘청 소년회복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지원

<p>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후지원체계 보장: 사법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 의료 지원, 보호 조치를 연계할 것 • 개인정보 보호: 재판 기록 및 신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아동의 미래 권리를 보호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호 위탁할 수 있는 ‘아동보호치료 등 기타 소년보호시설’의 전국적 확충 2)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의 전국적 확대(지역별) 설치(과밀수용, 개별처우/인격적 처우 시행 어려움) •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대행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에 대한 1인 1실 수용의 원칙마련 •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제한 원칙 확립: 기본권 제한 (물품소지 금지, 신체검사, 심신안정실 수용(징벌적 격리 등))법률의 직접적 근거 없이 하위 법령이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제한 필요 •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수용된 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의무 관련사항 고지 법정화 • 주·부식 지급 기준 개선 • 일정범위 내 자비물품 구매 허용 • 실외운동에 관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 • 면회나 편지 왕래에 관한 적극적 보장 • 가족면회 시 소속 공무원의 참석 최소화 방안 마련 •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생활실 및 소지품에 대한 검사방식 개선 • 전자영상장비 이용한 계호 방식 개선: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등 상시감시 하는 방식 개선 필요 • 심신안정실 수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 개정 필요 • 징계관련 규정의 정비 및 보완 • 원장 면접 신청권 법제화 • 소년의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 • 외국인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우규정 신설 • 소년분류심사원을 대신할만한 민간운영의 위탁기관 도입방안 고려 필요 3) 구치소/교도소 (14세 이상 범죄소년 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 구속된 범죄소년이 성인과 함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

12)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child-friendly justic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2010) <https://rm.coe.int/16804b2cf3>

13)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소년사법관련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제 (20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s://www.unicef.or.kr/data/upload/ebook/crc-publications/732/>
<https://www.nypi.re.kr/lib/10120/contents/6211835> ,

나가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장 소피 킬라제(Sophi Kiladze)의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보호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긴급한 구조 신호입니다’라는 지적처럼, 소년범죄는 개인의 일탈이기 이전에 ‘국가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뼈아픈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회는, 우리는 왜 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엄벌의 위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인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을 조기에 사법으로 단죄하여 낙인과 재범의 굴레로 밀어넣는 ‘아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선택’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우려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 1) 가해아동과 피해아동 모두가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과 회복 중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주시시오.
- 2) 아동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손쉬운 길 대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촘촘하고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 3) 아동을 이룬 나이부터 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회복적 사법과 아동친화적인 사법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주시시오.

감사합니다.

끝.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5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토론
5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형사미성년자 문제를 ‘연령 인하’라는 단선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실질적 이행 과제로 논의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배상균 연구위원(이하 발제자)의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촉법소년 대책이 연령 하향이라는 엄벌주의적 담론에 치중되면서, 정작 현장에서 작동해야 할 ‘교육적 개입’과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핵심 가치가 소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발제문의 논지에 동의하면서도, 다음의 몇 가지 쟁점을 추가로 다루고자 합니다.

1. 수사를 넘어선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

발제자는 경찰 조사권을 곧바로 확대하는 방향이 자칫 촉법소년 사건의 ‘사실상 형사절차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우려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확대’라는 프레임을 넘어 ‘피해 규모 파악 및 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기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피해의 발생 경위, 확산 범위, 유포 경로가 집약된 ‘사건의 실체이자 피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촉법소년 조사는 보호사건 조사로 진행되어 가해자나 보호자가 협조를 거부하면 휴대폰이나 SNS 대화 내역을 확보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 영상이 누구에게 어떻게 유포되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는 영구적인 불안과 2차 피해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여 피해 규모를 초기에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안전권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증거 임시 보존 명령’과 같은 제도가 초기 단계에 결합되어야 합니다.

2. ‘화해권고’를 넘어선 실질적 회복과 대응 모델의 ‘행정적 절차화’ 함정 극복

발제문은 ‘경찰-회복적 대화-보호자-학교-지역기관 연계’를 촉법소년 사건의 기본 대응 모델로 삼고, 경찰 단계에서 화해권고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향에 동의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화해권고’라는 용어 자체가 피해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화해’라는 말 자체를 용서의 강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해권고’보다는 ‘피해 회복 지원’, ‘당사자 대화 지원’ 등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용어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회복적 대화를 포함한 대응 모델이 절차로만 이해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대화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적 대화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와 충분한 준비를 전제로, 전문가가 개입하는 구조 안에서만 작동해야 하며, 절차가 아닌 피해자 회복의 수단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통계 체계에 재범 추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발제자가 제안한 ‘증거기반 정책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범죄통계가 단순한 발생 건수 집계를 넘어 ‘장기적 재범 추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고 ‘개입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 청소년의 심리적·환경적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임상적 행동 지표 분석’을 정책 수립의 선행 조건으로 삼아,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재사회화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후 재범 여부와 재사회화 성공률을 객관적으로 추적하는 체계 없이는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거나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탁틴내일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8,173명의 한국판 청소년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K-YSR)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우울 및 불안 지표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25년 위축 지표는 54.51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비행의 외현화 문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격성 지수는 10년 내내 52~53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 청소년들의 고통이 ‘외부로 터뜨리는 분노’에서 ‘내면으로 굹아가는 침잠’으로 그 축이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은 외현화 지표가 비해당 그룹보다 낮아 겉으로는 평온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의 내재화 지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역설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단순한 외적 통제를 넘어, 청소년의 내면적 고통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심리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탁틴내일의 데이터는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을 거쳐 간 소년들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도, 폭력, 사이버 범죄 등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4.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과 통합 사례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발제자가 제안한 소년분류심사 기능 강화와 6·7호 처분의 실질화를 비롯한 처우 인프라의 확충은 소년사법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대적 선결 과제입니다. 현재 피해 청소년을 보호할 긴급 지원 체계나 적절한 쉼터가 부족하여, 더 큰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 역설적으로 ‘우범’이라는 명목을 붙여 교정 시설인 6호 시설로 보내야만 하는 현실은 보호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확충은 단순히 시설의 양을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을 ‘가해’, ‘피해’, ‘위기’, ‘우범’으로 분절하여 칸막이에 가두는 현행 공급자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복지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관 간의 장벽을 허물고 교육·복지·상담 자원을 아동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즉각 투입하는 ‘통합 사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때, 발제자가 제안한 분산형 치료 인프라도 비로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입의 연속성과 전문성입니다. 현행 소년사법 절차는 수강명령과 같은 단발성 처분을 이수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아동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처분 이후에도 아동의 심리적 변화와 환경적 개선 정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아동의 비행 원인과 발달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특수한 범죄 유형과 아동 개개인의 성향에 맞춘 전문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결과나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청소년에게 심리적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이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 그것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재사회화의 시작입니다.

형법은 사회가 건널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야 동원되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다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지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먼저 묻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년사법이 구현해야 할 지향점은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직면하게 하는 ‘회복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자 예방책입니다. 가해 아동의 진정한 성장과 피해자의 존엄한 회복이 맞닿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소년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6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한계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대응 방안 논의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토론
6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한계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대응 방안 논의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I. 들어가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는 촉법소년 전체를 형사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형사책임능력을 형사정책적으로 몇 살부터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14세는 형사책임능력이 있고, 13세는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시대에도 타당한지를 논해야 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저지른 중대 범죄를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년범죄의 형태가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 소년사법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한계 및 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 문제를 포함하여 소년사법 관련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간략히 논해보겠다.

II.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

1. 기존 촉법소년, 소년범죄 통계 검토

가. 촉법소년 통계 분석

(1) 촉법소년의 소년부송치 현황

2025년까지 소년부송치된 촉법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살인, 강도 범죄 발생율이 낮아 강력범죄 비율이 높지 않아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흉포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견해들이 있지만 강간·추행 사건은 증가하고 있고(2025년 다소 감소), 방화, 폭력, 기타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방화¹⁾,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촉법소년의 범죄가 경미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통계 분석을 할 때 아동·청소년의 인구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²⁾ 강력범죄

1) 동아일보, “장난으로”...다주택 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초등생 2명 입건“, 2026. 4. 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04/133674465/2>

소년부송치 인원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도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살인, 강도와 같은 전형적 형태의 흉악범죄 외에도 잔인한 형태의 범죄 유형이 증가하고 있고, 딥페이크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이버폭력 형태 또한 계속 등장하고 있다.³⁾

(2) 촉법소년 나이대별 소년부송치 통계

구분	총계	10세	11세	12세	13세
2019	8,615	472	726	1,747	5,670
2020	9,606	530	745	2,021	6,310
2021	11,677	1,124	1,360	2,891	6,302
2022	16,435	1,431	2,298	4,216	8,490
2023	19,653	1,705	2,646	5,616	9,687
2024	20,814	1,862	2,872	5,596	10,484
2025	21,095	2,060	2,892	5,658	10,485

〈출처 : 경찰청, 법무부〉

13세 촉법소년의 소년부송치 명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촉법소년의 소년부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전체 소년보호사건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구성비 분석

소년부송치 접수 건수가 전체적으로 2021년 35,438명, 2022년 43,042명, 2023년 50,094명, 2024년 50,84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6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의 소년부송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14세 미만의 소년 사건이 전체 보호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3.6%, 2021년 18.7%, 2022년 21%, 2023년 23.7%, 2024년 23.5%로 증가하고 있다.⁴⁾

나. 14세 이상 소년범죄 통계 분석

2025년 통계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아 2024년까지 범죄 추이를 분석하였다. 2021년 54,017명, 2022년 61,026명, 2023년 66,758명, 2024년 61,956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24년 다소 감소하였다. 강력범죄(폭

2) 아동인구(0~17세)는 664만 4957명, 청소년인구(9~24세)는 748만 7073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23만 1373명(3.36%), 22만 5314명(2.92%) 줄었다. 파이낸셜 뉴스, “고령인구 지속 증가...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는 지속 감소”, 2026. 1. 4., <https://www.fnnews.com/news/202601021731307771> 참고

3) 국내 상황을 보면 사이버 불링 등 피해를 경험한 후 자살 충동, 자해 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 사이버성폭력을 겪은 학생은 자살, 자해 충동 경험률이 65.6%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 2025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참고.

4) 대법원, 2025년 사법연감 통계.

력) 사건은 2021년 13,614명, 2022년 15,429명, 2023년 15,316명, 2024년 15,118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살인·강도·방화(흉악범)는 2021년 265명, 2022년 279명, 2023년 313명, 2024년 282명으로 2021년에 비하면 소폭 증가하였다. 성폭력은 2021년 3,341명에서 2024년 4,30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2023년 678명에서 2024년 1,06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⁵⁾

2. 학교폭력 현황 분석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수 조사에 따른 가해 응답률을 보면 2022년 0.6%, 2023년 1.0%, 2024년 1.0%, 2025년 1.1%로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가해 응답률이 2022년 1.3%에서 2025년 2.4%로 2배 정도 증가했고, 중학교는 2022년 0.3%에서 2025년 0.9%로 3배 정도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 변화를 보면 2022년 1.7%에서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로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가 2022년 3.8%에서 2024년 5.0%로 크게 증가했고, 중학교도 2022년 0.9%에서 2025년 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가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학년별로 분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대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3. 딥페이크 기술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신종 범죄 발생

최근 소년범죄는 첨단화되고, 지능적이며, 범행 규모 및 피해도 커지고 있는 변화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상 지속적인 괴롭힘, 첨단 사기 범죄, 현금 수거책 보이콧 피싱 가담 등 조직범죄의 증가, 대면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SNS 등을 통해 게시하며 범죄(일명 ‘해피 슬래핑’)를 과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⁷⁾,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외에 가족사진까지 합성해 괴롭히는 행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⁸⁾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석이기는 하나 변화된 범죄 태양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어 소개한다. 가해자 직접 촬영 방식(47.6%)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 촬영, 제작(49.8%)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그루밍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 등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이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행 수법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가해자의 피해 아동·청소년 성적 이미지에 대한 유포·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로 2019년 8.5%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도 11.1%나 되었다.¹⁰⁾ 한 보안서비스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딥페이크 성

5) 대검, 2025년 범죄분석 참고.

6)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5. 9. 17. 보도자료 참고.

7) 신혜진, “사이버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개선 방안 -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성폭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8., 62 ~ 65면; 동아일보, “[단독]무차별 폭행 장면 올린 뒤 ‘도파민 채워드려요’... ‘학폭 영상’ 활개”, 2026. 3. 2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28/133626743/2>

8) 충청투데이, “딥페이크 넘어 출결 조작까지...청소년 AI 일탈 심각”, 2025. 12. 8.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768>

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 지속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 2024. 4. 2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 -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2025. 4. 30.

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결과가 나왔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이었다고 한다.¹¹⁾

III.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한계

1. 재범률 분석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따로 확인되지 않고,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의 재범률에 대한 통계가 있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경우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평균 12.5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평균 4.85%인 것과 비교하면 약 2.6배 높은 수치다.¹²⁾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인 방식의 제재가 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줄이는데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2. 중대 범죄의 증가

소년부송치되어 소년원 송치 처분(8호~10호)된 14세 미만 촉법소년 명수는 2021년 28명, 2022년 50명, 2023년 152명, 2024년 250명, 2025년 182명이었다. 2025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21년에 비하면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¹³⁾ 이러한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 유형을 보면 중학교 1학년생이 다른 동급생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조사 결과 부모의 신체 사진까지 요구한 패륜적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유도 기술로 같은 반 학생을 기절시킨 뒤 바지를 벗기고 신체에 이물질들을 강제로 넣는 등 동급생 7명에게 폭행, 성추행, 갈취를 한 엽기적인 사건도 발생하였다.¹⁴⁾ 얼마 전 서울내 백화점 폭파 허위 신고도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일명 ‘스왈팅(swatting)’ 범죄로 이러한 범죄가 소년들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¹⁵⁾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61.8%를 차지하고, 피해자도 아동·청소년 비율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등 10대 딥페이크 기술 관련 범죄는 2022년 52건에

1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 2023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2025. 4. 30.
 11) 2위는 미국(20%), 3위는 일본(10%)이었다. 경향신문, “딥페이크 성착취물 1위 국가는 한국…등장인물 53%가 한국인”, 2024. 8. 28. <https://www.khan.co.kr/article/202408281309001>
 12) 이데일리, “조진웅 사태가 부른 소년범 논란…재범률, 성인의 2.6배”, 2025. 12. 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90166642396552&mediaCodeNo=257&OutLnkChk=Y>
 13) 뉴시스, “[단독]소년원 간 아이들 4년새 6배 급증…처벌 강화론 확산(촉법소년 리포트①)”, 2026. 3. 28., https://www.news1.com/view/NISX20260325_0003563833 참고.
 14) MBC 뉴스, “[스트레이트] '촉법소년' 진짜 해법은?”, 2026. 3. 22.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809428_28993.html
 15) 연합뉴스, “[스왈팅에 빠진 아이들] ①"놀이하듯 폭파협박"…공권력을 범행도구로”, 2026. 3. 8.,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6138300061?input=1195m>

서 2024년 548건으로 2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¹⁶⁾

3. 진정한 법적 책임 인정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가해 소년은 서면사과 조치를 받지만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피해 학생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해 소년이 계속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발적이고, 진정한 책임 인정이 이뤄지기 힘들다.

축법소년이 소년부송치되는 사건은 검사의 조사나 기록 검토 없이 경찰에서 바로 송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 소년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부송치되고, 증거 조사도 형사재판절차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가해 소년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성 없이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피해자의 참여 절차 미비 및 피해 방지

소년보호사건 절차는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없고,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피해자의 사건 관련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형사재판절차와 달리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소년법 제25조의2에 피해자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의견 진술 절차와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고, 가해 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언제든지 가해 소년을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절차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IV.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

1. 일반 예방 및 재범 방지 효과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제재로 받아들이는 소년들은 거의 없고, 소년원으로 송치된 경우도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제재로서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강력,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 가해 소년은 항고할 수는 있으나 검사의 항고권이나 의견 진술권이 없어 처분 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법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가해 소년에게 제재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자신에 대한 처분이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16) 시사저널, “딥페이크 성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2026. 1. 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48>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교육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¹⁷⁾, 부모들 또한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여러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교육의 확대와 인력 확충만으로는 소년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힘들 것이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 전체 촉법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형벌을 무조건 부과해야 하는 극단적 응보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물변별능력과 변별에 따른 결정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 사회에 심각한 피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자살 등)를 가한다면 이러한 촉법소년을 형사절차로 편입시켜 촉법소년의 범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 놓자는 것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적 규제 제도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¹⁸⁾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함께 해 나가며 대응하자는 것이다.

2.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절차 참여 보장

촉법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는 주로 또래 피해 청소년이 당하게 되는데¹⁹⁾, 이들의 피해는 가해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회복되기 어렵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의 인정,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재범할 위험이 많은 가해 촉법소년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또래 피해 소년들은 학교나 일상에서 다시 가해 소년을 마주쳐야 하는 공포와 2차 피해를 당할 두려움 속에 지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소년사법은 소년 사건에서 가해 소년에 대한 낙인 방지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외시켜 왔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중대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계속 처리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절차에서 계속 소외되고, 무고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피해를 외롭게 짊어져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절차 참여권,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그들의 피해가 형사재판절차와 같이 현출되고, 양형에 반영되어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7) 중앙일보, “중학생이 여교사 때려 ‘전치 2주’ 응급실행...‘학생부 기록 안 남아’”, 2026. 4. 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8769> “중학생이 여교사 폭행해 응급실행”.

18) 싱가포르의 10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있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아동이 행동의 결과 및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미성숙한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중국은 2020년 12월 26일 형법 제17조를 개정하여 형사책임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하향하였다. 중국 형법은 미성년자를 나이대별로 세분화하여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이다.

19)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세이기는 했으나 2022년에는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세였고, 피해자 전체 수는 2022년 3,736명에서 2023년 4,661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앞의 보도자료 참고.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던 일명 ‘자경단’ 사건은 2020. 5.경부터 2025. 1.경까지 일명 목사인 총책이 목사, 전도사, 예비전도사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성폭력 조직을 만들어 남녀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강간, 유사강간, 불법 촬영 등 성착취를 하고(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미성년자를 가학적 변태적 수법으로 강간하며 이를 촬영하는 등), 1,000건이 넘는 딥페이크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사건으로 피해자 159명이 10대였던 잔혹한 형태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반성보단 미성년자라는 점을 책임을 회피하는데 악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일보, “‘호기심에 n번방 모방’ 성착취 ‘자경단’ 총책... 2심도 무기징역 구형”, 2026. 3. 27.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2716440005608?did=NA>

3. 해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입법 움직임

2025년 독일에서 13세 소년이 12세 소년을 다가오는 열차 앞으로 밀쳐 넘어뜨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도르마겐에서 12세 소년이 14세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쟁이 불붙고 있다. 독일에서 폭력 범죄 혐의를 받는 아동 수가 2024년에 약 13,8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2016년 수치의 2배 이상이라고 한다.²⁰⁾

스웨덴 정부는 최근 살인, 살인미수, 총기 범죄, 성폭력 등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고, 18세 미만에 대한 최대 형량 상향제도 14세 미만에게만 적용하는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²¹⁾

4. 부모 교육 및 부모 책임의 내실화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²²⁾ 미국은 부모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수정 형법 제272조²³⁾에 따라 다이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잘 이행한 부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부모교육협약, 부모교육명령이라는 제도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부모교육협약이라는 자율적 형태의 부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부모교육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모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그 부모가 최대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²⁴⁾ 독일도 형법 제171조에서 1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보호 또는 교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자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범죄 성향을 보이게 하거나 윤락행위를 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부모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V. 나오며

아동·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문제를 연구해 오면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분쟁조정, 형사조정 등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 교육을 통한 원만한 해결 또한 계속 강조해왔다.²⁵⁾ 그러나 실무에서 소년범과 그 가족들의 변화를

20) <http://www.lto.de/recht/nachrichten/n/jugendstrafrecht-herabsetzung-straftmuendigkeit-strafrecht-kinder-jugendliche>

21) <http://www.irishlegal.com/articles/sweden-to-reduce-minimum-age-of-criminal-responsibility-to-13>

22)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원의 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이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23) 캘리포니아는 「수정 형법」 제272조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법에 규정한 합리적인 보살핌(reasonable care), 감독(supervision), 보호(protection), 그리고 통제(control)의 의무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형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위반할 시 경범죄로 처벌되는데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 기간 내에서의 구금,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Penal code §272 (a).

24) 신혜진, “소년 사법에서 부모책임에 관한 연구-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2.

25) 신혜진, “회복적 사법의 한계 극복 및 형사사법 정의와의 조화- 소년 사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21. 12.

직접 경험하고, 더 잔혹해지고 빠르게 증가하는 소년범죄를 접하면서, 교육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교와 가정의 교육적 역할이 많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가의 개입을 통한 회복적 사법 제도와 교육으로 소년범들의 즉각적인 교화나 개선을 바라기에는 이들을 둘러싼 사회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소년범죄의 발생, 변화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다. 교육과 다양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한편, 법의 엄중함과 책임의 무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연령이 낮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것은 피해자, 그 가족의 피해, 그들의 고통과 울분에 공감하고, 촉법소년의 범죄를 자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강력·중대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촉법소년에게 절대적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7



“절차만 있고, 소년은 없는 소년법” 선별 송치 및 조사 권한 등 경찰의 ‘송치 전 단계’ 도입 중심으로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토론
7

“절차만 있고, 소년은 없는 소년법” 선별 송치 및 조사 권한 등 경찰의 ‘송치 전 단계’ 도입 중심으로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I. 서론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디지털 범죄 등 질적으로도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소년법」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특히 조사·심리 권한이 소년부 판사에게 집중된 사후적 구조로 인해 경찰 단계의 초기 개입·예방 기능은 제도적으로 약화해 있으며, ‘송치 전 단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제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권리 보장,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전건 송치 제도는 경미 사건까지 사법절차로 유입시켜 비효율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앞서 발표해 주신 배상균 연구위원님의 5가지 제언에 모두 동의하며 특히, ‘제언 2. 경찰 단계 초동절차 법제화’와 연결 지어 경찰의 ‘송치 전 단계’ 중심으로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견을 뒷받침하는 관련 통계 등은 앞 포럼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된 바 있어 이전 포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I. 경찰 단계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촉법소년 ‘선별 송치’ 제도의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경찰서장이 모든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이러한 일률적 전건 송치 구조는 사안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이미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실익이 낮은 가벼운 사건까지도 형식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 지연’과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 회복이 완료된 일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한 ‘무인점포 소액 절도’ 등 경미 사안 역시 예외 없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고, 이들 사건 중 상당수는 법원 단계에서 심리 불개시 또는 불처분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앞서 배상균 연구위원님의 발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2024년 전체 소년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51,020건으로 그중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15년 7,404건에서 2024년 21,139건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보호처분 비율에서는 50.1%에 그쳤고 특히, 주목할 건 10건 중 약 4건

(37.4%)이 ‘심리 불개시’였습니다. 또, 촉법소년 범죄 양상에서도 앞서 발제 내용과 같이 절도와 폭력, 강간·강제추행이 최근 3년 사이 증가했지만, 비중으로 보면, 절도와 폭력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사건의 실질적 필요성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편,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5조(경찰 훈방)에 따라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신속한 선도 및 사건 종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면 촉법소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경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해서 처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나아가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선도 역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자료를 주목해 주시면, 실제 경찰 단계의 선도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른 재입건율에서 ‘25년 기준 전체 소년범 재범율이 20.6%였다면, 경찰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율은 15.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표2-1] 경찰청, 연도별 선도 활동 현황(경찰청 자료)

구분	범죄예방교육		위기청소년면담		선도제도 연계 인원(명)		
	횟수(회)	인원(명)	횟수(회)	인원(명)	전문가 참여제	선도프로그램 연계	선도심사委
’23년	15,832	2,306,369	73,688	17,182	15,119	30,155	4,995
’24년	19,460	3,280,160	134,750	27,787	17,157	31,665	8,889
’25년	23,771	3,592,235	151,946	32,476	17,817	32,111	8,841

[개선 방안] 앞선 통계에서 보았듯이 법원의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결정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보호 필요성·개입 효과성 등 「소년법」에서 전제하는 소년의 ‘반사회성’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선별 송치가 필요하며, 이는 불필요한 사법절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선도의 효율성은 물론 청소년의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별 송치 제도를 단순히 법원과 경찰 간의 ‘권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년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재정립’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선별 송치 제도를 통해 법원은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집중하고,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소년의 위험성과 개입 필요성을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경찰 조사 권한’ 도입의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현행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조사 권한을 주로 ‘소년부 심판 단계’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조사 명령권(제11조)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조사 또는 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제13조 및 제14조), 나아가 검증·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7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모두 소년부 송치 이후의 절차를 전제로 한 것으로, ‘소년부 송치 이전 단계’에서의 조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현행법은 형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가 보호처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년법이 규율하는 ‘송치 전 조사’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고 있으며,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경찰 단계의 조사 활동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조사의 권한에 맞서 경찰 단계에서는 방어권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압수·수색·검증 권한이 소년부 판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해석이 일반화되면서,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는 사례¹⁾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 경찰은 대상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여 인적사항 확인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 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과 맞물려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실제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년부 조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경찰의 초동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 방안] 따라서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①경찰 단계 조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②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절차적 통제 기준 정립 ③일정 요건 하에서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면, 일본은 연이은 촉법소년 강력범죄 발생을 계기로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 권한(법 제6조의2)을 부여하고, 소년 및 보호자의 보조인 선임권(제6조의3), 조사 시 준수사항(제6조의4),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처분 권한(제6조의5)을 명문화했습니다(이재광·이상원, 2019). 이는 실제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권리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실효적 조사와 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1) [학교폭력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 집단 학교폭력 피해자 투신 사망 사건 관련, 촉법소년 5명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압수영장을 신청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 압수 수색은 소년부 판사의 전권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여 추가 조사없이 송치, 피해자 부친이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가 있음.
 [디지털 성폭력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각 사례] 촉법소년 불법촬영 사건으로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증거인멸 우려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소년법에 대한 강제수사 권한은 소년부 판사에게 있다며 압수영장 기각함.
 [촉법소년 조사 비협조 사례] 보호자에게 소년과 동행 출석을 요청하자 “경찰들이 알아서 해라”라며 비협조함. 보호자가 “소년을 경찰서까지 불러서 조사하냐”라며 항의, 조사 거부함.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8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미성년자 제도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토론
8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미성년자 제도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1. 들어가면서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신체적·지적 발달 수준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¹⁾ 특히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단순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비중이 늘고 있는 점²⁾, 만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³⁾ 이와 관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배상균 연구위원님께서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여 제도 보완 및 절차 정비의 작업 등을 통하여 소년법들의 교화를 꾀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을 정하는 연령기준 설정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궁극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형사미성년자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짧은 소견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2. 보호의 대상인 피해자, 처벌의 대상인 가해자 그리고 미성년자

우리 형사법은 2020년을 기점으로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죄를 의율하는 형법 제305조의 경우 기존 13세 미만의 피해자만 강간의 피해자로 보았던 것에 비하여 2020. 5. 19.에 동조 2항을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만16세 미만의 피해자도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동법

1) 법무부 '소년범죄 통계 및 연령 하향 추진 배경 보고서(2025.12.)' 참조

2) 그러나 경찰청에서 발표한 촉법소년 송치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범죄유형 가운데 70%가 절도와 폭력에 해당하며, 오히려 강력범죄의 경우 2016년 6.5%였던 것에 비하여 2025년에는 3.9%가량으로 그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 「범죄자 연령」(2026. 1.) 및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2026.1.)참조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이라 하지 않고 대상아동·청소년이라 정의하여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의 미성숙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 성매매에 유입되는 미성년자들의 저연령화가 두드러지는 현상 등을 바탕으로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들을 두텁게 보호함이 마땅하다는 사회적 합의⁴⁾에 따라 법률이 개정, 현재는 오히려 피해자로서 보호받으며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⁵⁾

즉 불과 6년 전만 하여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었으며,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는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을 받아야 했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피해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미성년자는 미성숙함으로 인해 자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게 기대하는 정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비단 피해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범죄를 행한 미성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기대되는 올바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제하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처벌 대상 확대를 위하여 하향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동일하기에 이들을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소년보호시설 확충의 필요성

발제문에서는 소년분류심사의 기능 강화에 대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보태어 본 토론문에서는 소년보호 처분 제6호 시설의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년법에서는 가정과 사회와의 분리가 필요한 촉법소년들 가운데 무조건 소년원으로 송치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재교육,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시설 위탁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그리고 현재 전국에 6호처분을 받은 촉법 소년들이 머무르는 보호시설은 총 8개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4) 조진경, 김진, 김현아, 박혜란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현황과 향후과제」, 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7.

5) 법령에서 성을 매매한 청소년에 대한 정의 개정(신구조문비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표1. 6호시설 현황(2026. 3.)〉

	시설명	성별	주소	정원(명)
1	나사로청소년의 집	여자	경기도 양주시	40
2	늘사랑청소년센터	여자	대구시 수성구	32
3	돈보스코 라토리오	남자	서울시 영등포구	40
4	로템 청소년학교	남자	충북 제천시	36
5	마자렐로센터	여자	서울시 영등포구	50
6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남자	대전시 동구	100
7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남자	서울시 영등포구	80(49 예정)
8	희망샘 학교	남/여	전북 고창군	70 ⁶⁾
합계				448

6호처분은 보호관찰처분과 장·단기 소년원 송치의 중간 단계의 처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용인원은 최대 448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경우 정원이 현재보다 31명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자 촉법소년들의 경우 6호시설의 수용 인원은 전국을 통틀어 145명⁷⁾밖에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6호처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는 6호시설이 전무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6호시설 신설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기존의 양육시설을 대상으로 6호시설 전환 수요 조사를 하여도 희망 시설이 없어 6호시설의 확대 설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⁸⁾

6호시설의 질적강화 또한 양적강화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질적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전국의 6호시설의 수와 그 수용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6호시설은 필연적으로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보호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촉법소년들의 교화 및 재사회화 효과를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면 촉법소년들이 제대로 교화되지 못한 채 그저 보호시설에서 시간만 보내는 방식으로 지내다가 퇴소하게 되고,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이와 같다면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의 비행을 온전히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제대로 교화하고 재사회화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한 우리 사회의 탓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범죄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증가하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6호처분에 해당하는 소년범의 증가에 대한 해결책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6) 남녀 비율이 약 2:1정도(출처 : 희망샘학교 홈페이지-현재 남자26명, 여자12명이 법원의 6호처분으로 희망샘 학교에서 지내고 있음)

7) 희망샘 학교의 정원 70명 가운데 1/3을 여학생으로 가정, 최대인원을 계산함.

8) 2024. 5. 29. 부산일보-‘6호처분’ 소년범 감호시설, 부울경에는 없다.

4. 소년재판의 비공개주의와 피해자 권리보장의 어려움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은 피해자에 대한 불친절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한 이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야만 하기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만 보호받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답답해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갑니다.⁹⁾

실제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번호 조회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일통지조차 재판부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 진술권의 행사조차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30조의2에서는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문에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까지 보장하고 있는지는 모호합니다.¹⁰⁾ 그렇다 보니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의 성향에 따라 열람·등사의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처분결과의 비공개는 피해자의 지위를 참가의 주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현행 형사절차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그저 참고인으로써 바라보지 않고 있는 소년재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년재판의 비공개주의는 처벌의 효과를 넘어 교화와 보호의 목적이 더 중시되는 소년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촉법소년이 성인이 된 후 미성년자 시절의 비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처분에 대한 비공개를 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피해자가 알 수 없는 현행 방식은 피해자를 사건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 참여권, 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권, 처분 결과에 대한 알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온전한 참여권이 이루어질 수 있길 촉구하는 것입니다.

5. 마치면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문제는 흘러들어서는 안 되는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을 교화에 중점을 두어 성인 범죄자와 구별하고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그 자체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여 그저 처벌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재사회화시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현재 인적·물적·제도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채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만 할 경우 촉법소년의 미래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보완과 발전을 위하여 형사법에서 미성년자를 바라보는 시각,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의 시급성 그리고 소년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권리보장의 미흡함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면과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존재하나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9) 문서송부촉탁을 하여도 소년재판부에 따라 보호처분 결과를 송부해주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

10)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인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9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토론
9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발표자의 논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논지대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한을 낮추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년사법의 개선 논의가 이미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온 것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현재의 소년법과 소년사법의 현실에 기대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연령 하향으로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즉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연령 하향으로 촉법소년이었던 소년이 범죄소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뒤 가리지 않는 무계획성과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년 비행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비행 억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확대가 곧바로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표자께서 적절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처우개선, 즉 처분의 다양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촉법소년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상당히 엄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약한 처분만 받는다는 인식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았을 소년이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이 된 강력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연령 소년의 강력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보호자 부재 또는 학대, 따돌림과 같은 외적 요인이 소년의 정신질환이라는 내적 요인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호소년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연령 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합한 치료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형사절차보다 소년보호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생소한 각종 조사(분류심사, 결정 전 조사, 조사관조사)가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소년의 성향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처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년보호절차가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치료·의료·심리회복을 실제로 담당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형사법원의 인프라가 가정법원의 그것보다 훌륭하다면, 형사절차가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전국 유일의 소년교도소인 김천교도소나 전국 유일의 의료소년원인 대전소년원에 전담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것입니다. 교정기관으로서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국립법무병원이 유일한데, 보호소년이 그곳에 수용되어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연령 하향으로 촉법소년 일부를 형사절차로 돌리게 된다면 그나마 가능했던 것들마저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 따른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령을 하향할 경우, 종전에는 보호 중심의 소년보호절차에서 다루어 지던 저연령 소년까지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숙한 소년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과 낙인효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년사범이 지향해 온 보호와 교화 중심의 기본 원칙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법원도 다시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으므로 문제 있는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되돌리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년이 경험할 낙인효과를 생각해 보면, 쉽게 수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밀행적으로 진행되어도 교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년에게 필요한, 시의 적절한 개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토론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반대 의견을 드리기는 하였으나, 저의 진의는 발표자의 논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소년사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연령 논의를 넘어서서 소년사범의 절차정비, 처우개선, 피해자 권리보호 논의까지 확산되길 기원하면서, 부족한 토론을 마칩니다.

